의안 번호	427

2022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2022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2021. 11. 24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나. 의안번호 : 제427호

다. 제출일자 : 2021. 11. 17.

라. 회부일자 : 2021. 11. 17.

2. 제안이유

○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도모하고,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방송콘텐츠의 직접 제작이 가능하도록 교육 및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관계법령 및 업무협약에 따라 2022년도 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지출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(개정 2014. 5. 28.)

나.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법 제90조의2 제5항에 의거 설립되었으며, 본조 제7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(시청자미디어센터)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

다. 방송통신위원회, 서울특별시, 성북구,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상호 체결한 "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" 제5조에서 센터 운영비의 20%는 성북구가 분담하기로 하였음

- 운영비 분담비율 : 방송통신위원회 60%, 서울시 20%, 성북구 20%

라.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주요기능

○ 시청자 미디어교육·체험 및 홍보 지원

○ 시청자의 영상 및 방송제작 지원 및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

○ 시청자 권익증진 활동지원 및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지방재정법」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「방송법」제90조의2(시청자미디어재단)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예산편성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○ 본 동의안은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제3항[1]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음.

○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(이하 “미디어센터”라 함)는 2015. 12. 15.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 제고와 권익 증진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, 성북구청, 시청자미디어재단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설립·운영되고 있는 시설임.

□ 출연근거

○ 미디어센터에 대한 출연은「방송법」제90조의2제7항 및「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을 위한 업무협약」제5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2017회계연도부터 의회 동의를 얻어 운영비의 20%를 성북구가 분담하고 있음.

출연근거

○ **「방송법」 제90조의2(시청자미디어재단)**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

○ **「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」 제5조(운영비 분담)** ③ 센터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.

1.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%를 분담한다.
2.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%를 출연한다.

---

1) **「지방재정법」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출연규모

○ 2022년도 미디어센터의 운영비는 총 13억 5,510만원이 될 예정이고, 이 중 협약에 따른 성북구의 출연금은 전년대비 515만원이 증가된 2억 7,100만원 규모임.

〈전년도대비 출연금 현황〉

(단위: 천원)

구 분	2021년		2022예산(안) (B)	증감 (B-A)	증·감 사유
	본예산	최종예산 (A)			
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 운영	265,850	265,850	271,000	5,150	물가상승률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 증액

□ 종합의견

○ 본 동의안은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“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”라는 규정에 의거 제출된 동의안으로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